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가합53398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1나200747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가합533988 판결

전문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차원

담당변호사 최동욱

피 고 1.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

2. 주식회사 I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권혁, 이평희

변 론 종 결 2020. 10. 29.

판 결 선 고 2021. 1. 21.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51,233,000원, 원고 C에게 48,283,000원, 원고 D에게 30,000,000원, 원고 E에게 30,000,000원, 원고 F에게 30,000,000원, 원고 G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J 일대에 공동주택(총 2,619세대)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주택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추진위원회이고,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시행에 관하여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이다.

나. 원고 A은 2018. 2. 26., 원고 B은 2018. 3. 25., 원고 C은 2018. 3. 26., 원고 D은 2018. 3. 19., 원고 F은 2018. 3. 18., K는 2018. 2. 20., 원고 G은 2018. 4. 10.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장차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해 설립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K는 그후 원고 E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일괄승계하여 이 사건 계약상의 명의자를 원고 E로 변경하였다(이하에서는 승계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 E'로 기재한다). 이 사건 계약서 중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사업개요(사업계획)](전체)

1) 사업부지 현황

① 주소지: 서울 영등포구 J 일원

② 면 적: 56,887.52㎡(공동주택용지 45,968.80㎡, 녹지 5,016.13㎡, 공원 2,517.71㎡, 도로 3,384.88㎡)

③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2) 사업 예상규모

① 연면적: 320,473.69㎡(공동주택 288,335.95㎡/ 오피스텔 17,657.34㎡)

지상층: 229,828.52㎡(69,523.13평) 지하층: 90,847.44㎡(27,481.35평)

② 용적률: 499.97% (건폐율 18.49%)

③ 규 모: 공동주택(모집) 1,700세대, 공동주택(임대) 639세대, 오피스텔 280세대

총 2,619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 2층/ 지상 35층/ 아파트 16개동/ 오피스텔 1개동

※ 상기 사업개요는 향후 사업추진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승인 시 확정됨

제5조 [조합의 관리용역사]

1.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택조합의 구성, 행정, 세무/회계업무처리, 사업계획

및 인허가, 조합원관리, 각종 용역/계약 업무 등의 추진을 위하여 관리용역사 피고 회사를 선정하기로 하고, 조합관리용역계약은 피고 추진위원회가 체결하며,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은 이를 자동 승계한다.

2. 관리용역비는 피고 추진위원회 구성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 사업계획(변경)승인, 조합원 입주 및 청산/해산시까지 추진을 위한 용역비를 말하며, 조합가입계약 시 제7조의 조합가입 계약금과 별도로 조합업무 추진비 납부계좌로 납부하고, (이하 생략)

3. 관리용역비(수수료)는 전체 아파트건립 세대수 당 이천오백만원으로(부가가치세 포함) 또한 단지 내 상가관리 용역비(수수료)는 상가매출액의 5%(부가세별도)로 한다.

제7조 [조합원 분담금 및 그 관리]

9. 특약사항

① 토지대금 및 건축대금의 구분금액은 조합원분담금 총액 범위 내에서 수평적으로 이동될 수 있다.

④ 조합원 모집은 1층, 가(2층~5층), 나(6층~10층), 다(11층~15층), 라(16층~20층), 마(21층~25층), 바(26층~30층), 사(31층~35층) 별로 모집하고, 동·호수 추첨은 사업계획승인 이후 착공 전 실시하며, 층별 차등 금액 적용(분담금 총액 범위 내) 등은 피고 추진위원회가 산정하는데 각 원고는 이에 동의하고, 동·호수의 추첨방식과 시기의 결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이사회에 위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⑥ 피고 추진위원회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최종 사업계획(세대수, 사업비 등)을 확정한다.

제10조 [해약 및 손해배상]

2.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피고 추진위원회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로써 탈퇴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 [기타]

10. 각 원고는 제2조의 사업계획이 인·허가 및 사업구역계 변경(토지매입)에 따라 다소 변

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에 따라 동·호수 및 평형별 세대수가 다소 변경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도록 한다.

11. 각 원고는 사업계획승인 전까지 주택홍보관(건본주택) 내의 견본(마감재, 단위세대 평면, 구조, 모형도 등)은 최종 사업계획승인 후 착공 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 홍보를 위한 시각적 자료(조감도 및 자료 등)는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임을 인지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동의한다.

다. 한편, 위 각 계약서에 첨부된 가입신청서에는 ‘동·호수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 전 추첨 후 기입 예정’이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페이지 상단 표의 ‘신청평형’과 ‘동호수’ 기재 란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동, 호수와 평형을 각 자필로 기재하였다.

원고명	동·호수	평형
원고 A	L호	65㎡
원고 B	M호	65㎡
원고 C	N호	65㎡
원고 D	O호	65㎡
원고 E	P호	65㎡
원고 F	Q호	65㎡ A
원고 G	R호	65㎡

라.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원고 A은 30,000,000원, 원고 B은 51,233,000원, 원고 C은 48,283,000원, 원고 D은 30,000,000원, 원고 E는 30,000,000원, 원고 F은 30,000,000원, 원고 G은 30,000,000원을 피고 추진위원회 측에 조합원분담금으로 각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 회사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로서 피고 추진위원회와 함께 협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포함한 조합원 가입계약에 담을 내용을 검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을 모집하는 업무도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주택조합 가입자 모집 내지 아파트 분양을 위하여 이루어진 광고에는 조합설립 이전임에도 이미 건축할 아파트 동의 개수 및 각 동의 층, 평형까지 결정된 것처럼 평형, 동/라인, 층, 세대수, 분담금, 평당 단가까지 상세히 밝히고 있었고, 피고 추진위원회나 피고 회사 직원 등을 통한 상담 및 가입계약 체결 시 추천 등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가입계약서에 동호수를 지정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청구

원고들은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이 사건 분담금의 반환을 구한다.

가) 사기 내지 착오를 원인으로 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이 분양받을 아파트의 동호수를 특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특정하여 분양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 현황과 토지 확보 비율 및 사업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기망하였으며, 원고들은 이에 속거나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위와 같은 기망행위 내지 계약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는 바이다. 따라서 피고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 추진위원회에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피고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수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업부지 중 극히 일부의 소유권만을 확보하는 등 피고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다. 따라서 피고 추진위원회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기지급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임의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 청구

피고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추진위원회에 불과한바, 원고들은 피고 추진위원회의 규약의 적용을 받지 않고 조합원에서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므로, 피고 추진위원회는 원고들에게 기지급받은 납입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 회사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현황과 토지확보비율 및 사업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기망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 제760조에 따라 분양상당사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인 피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기지급 금원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계약에서 대상 아파트의 동호수를 특정한 것은 단순한 예상을 기재한 것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계약서상에도 동호수를 추첨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호수에 따라 조합원이 지급하는 가격이 달라지지 않고 평형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뿐이다. 또한 피고들이 사업부지 현황이나 사업부지 확보 비율 등 사업계획에 관하여 다소의 과장을 하였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는 없다. 신의칙이나 일반 상거래 관행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원고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섞인 홍보행위만으로는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상 사업진행 일정과 관련하여 확정적으로 약정한 내용이 없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 사건 사업 진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불이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추진위원회의 규약에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임의탈퇴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탈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추진위원회로서는 업무대행비 등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 피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기를 원인으로 한 계약 취소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부지 현황이나 사업 예상 규모가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 제2조 하단에 ‘※ 상기 사업개요는 향후 사업추진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승인시 확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9. 특약사항 제④항에는 ‘동호수 추첨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 전 실시하고, 추첨방식과 시기의 결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계약서 제16조 제10항에는 ‘원고는 제2조의 사업계획이 인허가 및 사업구역계 변경(토지매입)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에 따라 동호수 및 세대수가 다소 변경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서에 계약서 및 첨부목록의 내용을 ‘읽었음’, 지역주택조합원의 가입자의 고지사항 등에 대해 조합으로부터 직접 고지를 ‘들었음’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2항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조례와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상의 ‘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가능한 아파트의 최대 층수는 2016년 당시부터 현재까지 ‘7층 이하’이고, 그 이상 층고의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따라 보건대, 갑 제1 내지 5, 7 내지 12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이 사건 사업부지 현황 및 이 사건 사업 진행상황에 관하여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원고들로서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허위로 고지한 이 사건 계약의 중요부분을 믿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수년 내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평형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할 것으로 신뢰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사업 계획의 변경 가능성 등에 관한 유보적 표현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유인하는 광고와 홍보자료 및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현황을 ‘준주거지역’이라고 명시하면서 이를 전제로 용적율을 499.97%로, 전체 아파트 규모를 지하 2층, 지상 35층의 아파트 16개동, 오피스텔 1동으로 적시하고 있다. 피고 추진위원회는 1층, 2층부터 5층, 6층부터 10층, 11층부터 15층, 16층부터 20층, 21층부터 25층, 26층부터 30층, 31층부터 35층으로 나누어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위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다르게 책정하였으며, 실제로 원고들은 모두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서에 향후 분양받을 동호수를 기재하면서 8층 이상의 호수를 기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부지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7층 이하의 아파트만을 건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부지 현황상 피고 추진위원회가 고지한 아파트의 층고나 세대수를 전혀 충족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의 현황을 ‘준주거지역’으로 고지한 것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명백한 허위 고지이다.

② 나아가 이 사건 계약에서 사업개요는 향후 사업추진 및 인허가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건축물 등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이 사건 사업부지의 현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뿐 확정적으로 변경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관련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 추진위원회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의 현황을 ‘준주거지역’으로 고지한 것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고지한 것이다.

③ 피고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분양가를 안내하면서 평형과 층수, 각 세대별 위치에 따라 분양가를 상세하게 구분하여 정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계약금을 완납하고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착공하여 그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준공이 되는 것을 전제로 그 무렵 중도금을 완납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바, 비록 피고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에 착공하여 2019년말에 입주할 수 있다’, ‘이미 토지를 80% 확보하였고 2017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것이다’는 등의 말을 원고들에게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직접 증거는 제출된 바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의 성격에 비추어 장차 분양받을 아파트의 동호수 등 단지 내 위치와 층수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수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이 비록 설립인가 이전이기는 하나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하는 평형의 아파트의 수분양자의 지위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그런데 피고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 56,887.52㎡ 중 1,862.69㎡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뿐이며(전체 사업부지의 약 3.3%에 불과하다),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향후 소유권 확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피고 추진위원회의 위와 같은 기망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계약의 취소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20. 4. 29.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¹⁾

나. 사기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 추진위원회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 추진위원회는 원고 A, D, E, F, G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2차 계약금을 미납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었고, 실령 계약금 미지급만으로 바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추진위원회의 해제 통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원고들이 피고 추진위원회에 납부한 금원은 위약금으로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귀속되므로, 피고 추진위원회는 위 원고들에게 기납부 계약금 및 업무추진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피고 추진위원회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이상, 이 사건 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 추진위원회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 추진위원회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51,233,000원, 원고 C에게 48,283,000원, 원고 D에게 30,000,000원, 원고 E에게 30,000,000원, 원고 F에게 30,000,000원, 원고 G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추진위원회에 송달된 다음날인 2020.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추진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다음 그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들에 대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중요내용에 관하여 허위로 분양광고 및 홍보를 하는 등 주도적으로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 소속 직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 추진위원회와 함께 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민법 제756조, 제760조에 따라 피고 회사 소속 직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들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추진위원회에 지급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 의무와 피고 추진위원회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추진위원회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51,233,000원, 원고 C에게 48,283,000원, 원고 D에게 30,000,000원, 원고 E에게 30,000,000원, 원고 F에게 30,000,000원, 원고 G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다음날인 2020.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도영, 판사 신동주, 판사 이효은

1) 사기를 원인으로 한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선택적 청구원인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